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 수정하는 등 정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불필요한 자구 삭제, 수정 등 정비(안 제21조, 제25조, 제26조)
-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 확대([별표1])
 - (당초) 물품 ⇒ (변경) 물품 및 상품권
-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가액 상향 및 상품권 추가([별표1])
 - (당초) 10만원 ⇒ (변경) 15만원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추가
-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기간 가액 상향([별표1])
 - 30만원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5, FAX : (043)740-303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대상 :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비고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조례로서”를 “위하여”로, “(다음부터)”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 중 “강령”을 각각 “조례”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자문요청에 따라”를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긴급한 자문의”를 “긴급히 자문에 응할”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자문내용”을 “자문에 대한 의견제시 내용”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u>조례로서</u> 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u>다음부터</u>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이 <u>강령</u>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p> <p>2.·3. (생략)</p> <p>4. 이 <u>강령</u>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이 <u>강령</u>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2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의에서 제척된다.</p> <p>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u>당해</u> 사안의 당</p>	<p>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 ----- <u>위하여</u> ----- -----<u>(이하</u> ----- ----- -----.</p> <p>1. -- <u>조례</u> ----- ----- -----</p> <p>2.·3. (현행과 같음)</p> <p>4. -- <u>조례</u> ----- -----</p> <p>5. ----- <u>조례</u>----- ----- -----</p> <p>제2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 ----- ----- -----.</p> <p>1. ----- ----- <u>해당</u> -----</p>

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
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 관
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 해당 -----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
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3. ---- 해당 -----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
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 해당 -----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
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 해당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
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
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6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
----- 자문에 응
하기 위하여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
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
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⑤ ----- 긴급히 자문에 응할

----- 해당 -----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⑥ -----

----- 자문에 대한 의견제시 내용--.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16.>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8. 30.>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

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